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6월 22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1년 5월 21일
- 나. 제안자: 최동철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6.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동철 의원)

□ 제안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(안 제6조의3)
- 나. 여성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(안 제6조의4)
- 다.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(안 제6조의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6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, 제5조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조부서: 주차관리과

라. 입법예고(2021. 5. 27. ~ 6. 1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취지

- 「주차장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(안 제6조의3)

- 노상주차장¹⁾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,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,
- 노외주차장²⁾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,
- 부설주차장³⁾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함
(단,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됨)

<주차장법 제2조>

1) 노상주차장: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2) 노외주차장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3)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○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(안 제6조의4)

-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·노외·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비율은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함

○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(안 제6조의5)

-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주차장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 세부규정이 그 동안 입법 미비되었던 만큼 조속히 이를 보완·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,

- 주차구획 설치비율과 관련하여, 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비율 3%는 관련 법령4)에서 “2~4 퍼센트”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비율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 맞춰 산정된 것으로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

4) <주차장법 시행규칙>

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
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

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 법령 각 1부

□ 주차장법

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미만의 자동차(이하 “경형자동차”라 한다)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- 이하생략 -

□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
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
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(2) 장애인전용 주차구역	<p>(가)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,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.</p> <p>(나)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</p>
----------------	--